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3.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복지관 이용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규정함
- 나. 입속료는 시장과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정함
- 다.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2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미시 구포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구미시 구포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미시 구포동 670-2번지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관”이라함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입욕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과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 입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입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 관리) 당일 수입금은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으로 익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7조(입욕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욕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부질환이 있는 자 또는 만취자
2.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시장이 입욕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목욕탕 시설에 대하여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욕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
 2. 복지관 내외 정결유지
 3. 복지관의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유지 관리
 4. 기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독)

-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인력) 목욕탕 운영 인력은 매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시 확정된 인력으로 하며 근무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추천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된 후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